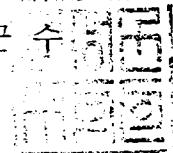


##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55

제출일 : 2000. 11. //

제출자 : 달 성 군 수



### □ 개정사유

-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도록 되어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64조(금고의 설치)

### □ 주요내용

-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예치시 기금을 군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예탁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)

### □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## 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성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5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기금은 군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 
예금으로 예탁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관리)①(생략)</p> <p>② <u>기금은 은행법,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</u></p> <p>③ ~ ⑤(생략)</p>	<p>제5조(기금관리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기금은 군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.</p> <p>③ ~ ⑤(현행과 같음)</p>